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검사 근거 마련〉

■ 권성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5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성동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8.

다.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에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마약류의 투약 등에 관한 검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직무상 필요한 조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등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마약 투약 의혹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표 1] ‘공무원 마약류 사범 입건’ 현황

(단위: 명)

연 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 계	10	16	7	17	19
국회	1				
행안부			1		
교육부		2		1	5
법무부	2	1			
국방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2	1
경찰청	1			2	4
소방청		2	1		1
국세청		1			
교육청	1	3	1	4	1
자치단체	4	6	2	7	6
기 타			1	1	1

※자료: 경찰청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타 직렬의 공무원과 비교해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특히 마약류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렬의 공무원보다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로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1) ‘24. 1.한국일보 「"생일에 마약 파티할 사람 모여라" 경찰관의 죽음으로 끝난 쾌락 모임」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마약류 투약 여부 등에 대한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²⁾한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이라는 광범위한 목적 하에 구체적인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검사 대상을 마약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마약사범 단속·수사와 관련한 경찰관이나 마약류 투약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효성 및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³⁾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의무도 없는 소변채취를 강요당하였다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하기 싫은 일(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 자기 신체상태나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알리지 않을 자유]과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6. 7. 27. 2005헌마27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3)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기 마약 검사 실시 움직임에 대해 성명서(2023.10.29.)를 내고, “한 경찰관의 일탈 행위를 경찰 조직 전체로 일반화하고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13만 경찰관들은 심각한 우려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음.

참고로, 「항공안전법」 제57조제4항 및 제5항4)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의 섭취나 사용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⁵⁾으로 측정할 수 있

4)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원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원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원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9조(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①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86호)

제8조(약물 측정) ①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단속하는 경우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발 채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단속 공무원은 약물 측정 시 해당 종사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받고 지체없이 타액 또는 소변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단속 공무원은 종사자가 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거짓 양성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섭취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단속 공무원은 타액채취봉을 통해 종사자의 타액을 채취한 후 타액채취봉의 색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면 약물측정기에 타액채취봉을 넣어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단속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약물 측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 해당 종사자가 깨끗한 음용수로 입안을 행구도록 하고 최소 15분 이상 경과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단속 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약물 측정 종료 시 약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결과를 종사자에

도록 하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6)의 경우 2024. 2. 6.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2024. 8. 7. 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법의 경우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최근 마약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내부 경각심을 높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은 재직중인 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소속 교육생(채용후보자와 경찰대학 학생)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게 확인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등 측정·단속 결과 기록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한 후 해당 종사자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일한 개정안에 대해⁷⁾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마약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검사 대상, 시기,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대상자 동의 없는 강제체포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44

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23.11.14.발의, 의안번호: 2125406)

[참고자료] 「경찰청 내부 마약류 통제 방안(案)」

- **(검사제도화)** 1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점검하는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긴요하나, 전수(全數) 점검은 비용·행정력·필요성 측면에서 과도하므로 매년 일정비율을 표본 검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대상)** 매년 관서별로 경각심 부여에 충분한 수준인 정원의 10%를 대상으로 검사
 - 다만, 총경 이상은 직책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술선수범의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전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 **(시기·방법)** 검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 검사’ 실시하고, 가장 간이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감지 방식의 ‘간이타액 검사’ 실시

▲혈액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에 의해서만 채취 ▲모발의 경우 모근 가까이 50~80수, 단모는 100수 이상 채취 ▲소변은 경찰관 입회하 채취 ▲타액은 키트를 물게(3분)하여 채취

○ **(소요 예산)** 414백만원

※ (간이 타액검사 시약 1개, 3만원×13,029명<경정이하 10%>)+(3만원×757명<총경 이상>)

- **(징계양정 신설)** 법 집행 기관으로서 “경찰 內 마약 범죄는 없다”는 비위 척결 의지와 상징성을 위해 마약류 범죄는 전원 배제(파면·해임) 징계(’24. 11. 28.)